

농림수산물 (農林水産物) 은 시장개방 (市場開放) 의 예외 (例外)

전일본농업협동조합중앙회

(번역: 진 두현 협회감사)

譯者(역자의말-이것은 1985년7월9일 발간 일
본에코노미스트誌에 실린 日本농업 협동조합중
앙회 농산물시장개방에 관한 반대PR 전문이다.

농업과 공업간의 상대적관계가 우리와 비슷하
고 수출주도형 경제로 나가고 있는 경제정책역
시 우리와 비슷한 일본 農産物의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국제, 국내양면으로 自由開放의 압력
을 받고있어 이에 決然히 反對를 선언한 PR 인
바 工業製品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日本의 農林
水産業이 짓밟힐 수 없다는 말과 비교우위 原
則에 의한 自由貿易의 룰은 食糧 農産物에는
適用할 수 없다는 論旨가 우리로서도 十分 음
미할만 하고 참고될 것이다.

전일본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 장 농림수산물은 시장개방의 예외

一、이 이상의 국토, 자원, 환경의 황
폐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수상의 성역(聖域) 부정 발언에 농민은 격분

정부는 85년 4월 9일 대외 경제대책 각료회
의를 열고 일본이 더 한층의 시장 개방을 진행
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7월 안으로 책정할것
을 중심으로 대외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같은날
나카소네 수상은 텔레비전으로 국민에게 그 내
용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이와모찌 전국 농
협중앙회장은 “경제적 강자의 입장에 선 일본
이 자유무역주의를 세계에 호소해도 무역마찰
은 해소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해서는 고급리
달리화 가치고(高)의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내에서는 공업제품의 수출주도형경제(輸出主
導型經濟)에서 진실로 내수주도형경제(內需主
導型經濟)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행
동계획이야말로 필요하다. 이같은 기본적대책
이 취해지지 않고는 농림어업을 희생케하는 시
장개방은 용인할 수 없다”하는 담화를 발표하였
다.

그러나 곧 이어 4월 19일에 열린 대외경제대
책추진본부(본부장 나카소네수상)에서 수상은
“시장 개방에 불가침의 성역은 없다. 농림수산
물일지라도 「원칙자유」의 예외가 아니다” 라고

譯註 ※ 1. 聖域...수입의 자유화로 보호권을 터트릴수 없는 分野의 뜻으로 여기서는 農業分野를 말함.

※ 2. 內需主導型經濟...輸出主導型經濟에 對峙 되는 말로서 國內消費增加로서 景氣好轉을 期하려는 것.

말했다. 이 수상의 농림수산물 성역부정 발언은 전국 각지의 농림어업자의 격분을 사게 되어 수 상관저에 항의의 전보가 쇄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전국산림조합연합회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9의 농림어업단체는 금번의 대외 경제대책의 기초가된 대외경제문제자문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자유무역주의의 강압으로서는 경제마찰은 해결못한다”라고 제목을 붙인 의견을 들어 공포했으나 다음과 같이 우리 농림어업 단체의 시장개방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편다.

정부의 시장개방정책에 대한 의문과 불안

우리들 일본의 농림어업자는 정부가 진행시키려는 시장개방정책에 대하여 많은 의문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즉 지금 같아서는 공업제품의 수출확대 때문에 일본의 농림어업은 깃뚫히고 말지 않느냐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외 경제정책의 첫째로 시장악세스(access)의 개입을 위한 행동 진행의 책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업제품의 분야에서 *3 비교적 우위(比較的優位)에 있는것중에 시장참입을 개선하여도 불균형의 시정에는 기본적으로 별반 소용없고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되지 못한다.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는 82년에는 189억불, 83년에는 368억불 다시 85년에는 500억불에 도달되리라 예측되고 있다. 구조적(構造的)인 것이다. 우리는 미국등과의 경제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주도형의 경제체질의 전환과 미국의 고금리(高金利)정책등에 의한 달러가치고(價値高)의 시정이야 말로 필요한 것이며 만일 이것이 진행안되고 금후도 수출의 확대가 계속될 때에는 일시적인 조치로서 수출과 징금(課徵金)의 도입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검

토되어야할 것이다. 내수확대(內需擴大)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56년이후 7차에 걸쳐 정정해은 대외경제 정책에도 항상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경제관측에 따른 국민소비지출의 확대를 중심으로한 성장도 이룩되지 못하고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이 계속되어 왔다. 차제에 이런 경제운명을 반성하고 내수확대를 위하여 보고서가 제의한 사회자본의 충실, 주휴(週休) 2일제의 도입, 저축장려정책의 재검토, 주택,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세제(稅制)의 도입등 외에 적절한 임금수준의 확보, 소득감세등,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소비지출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물은 시장개방의 예외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시장사정의 개선에 대하여 「원칙은 자유, 예외는 제한」이란 기본원칙의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예외로서 취급된 제한분야에 속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 환경보전이나 국민생활의 유지, 안전에 관한 것, 기타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위원회에서의 논의의 경과에서는 예외로서 취급될 분야로서는 식료(食料)와 에너지등을 들고있다. 오늘과 같은 국제화의 시대에 있어서마저 식료 등이 자유무역의 예외로서 위치를 잡게되는 것은 농업, 임업, 어업이 각각 식료의 생산, 국토자원의 유지, 보전, 수자원의 확보, 생활환경의 유지 향상등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각국의 국민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550만ha의 농지, 2500ha의 산림, 200해리의 전관수역의 유지 보전과 자원의 유효활용은 국민의 장래에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농림수산물의 시

*3. 比較優位...外國產과 國內產의 生産費를 比較하여 外産이 싼것은 輸入하자는 뜻.

장개방에 대해서는 *갓트/ 조국이행이래, 소위 수입제한품목을 76품목에서 22품목까지 가능한한 모두 자유화 하고 있고 또 농림수산물의 관세에 대해서도 이미 EC 수준을 밑도는 수준까지 인하하고 있다. 그결과 일본의 곡물 자급율은 32%로 세계에서 최저로 저하되었다. 이것은 같은 기간에 영국이나 서독이 자급율을 향상시켜 온것과 현저한 대조로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일본의 식료자급의 현상에 대해서는 총리부(總理府)가 발표한 세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세사람중 두사람은 자급율이 “너무낮아 걱정”이라한다. 또 네 사람중 세사람까지는 금후의 식료공급에 대하여 “국내에서 자급 가능한 것은 될수 있는대로 자급하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하고 있다. 임업에 대해서는 외재(外材)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세계의 산림자원의 남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 국내의 임업경영이 이룩되지 못하고 최성기에는 연간 40萬ha에 달하였던 식림(植林)이 13ha로 격감하는등 산림의 황폐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어업에 있어서도 수산물의 수입액은 세계제 1위로서, 국내생산액의 30%를 초과하고 있으나 미국, 소련 기타 제국의 어장, 어획제한이 가중되는 가운데서 재배어업등에 의한 연안어업의 진흥, 자원의 효과적이용이 요청되어 오고 있다. 우리는 한쪽에서 식료기아가 퍼져가고 있는데 우리 일본만이 돈이 미치는대로 식료를 사모은다든지, 산림자원을 수탈해 버리는 것이 언제까지라도 허용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의 국토와 자원을 유지, 보전해가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을 이 이상 증가해서 안된다는 것이 국민적 세론에 따른 정책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식료 농산물에 대한 새 무역 물의 확립을

- *⁵신라운드 촉진에 관련하여-

*⁶ 본사밋트에서는 불란서의 미테랑 대통령 이 신라운드에 농산물을 포함할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개시시기를 결정짓지 못한 채 끝났다.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일본이 “국제화를 위한 중기적목표로서 신라운드를 촉진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하고 자유, 무차별무역체제의 관철을 위한 조건정비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찬동할 수 없다. 아프리카에서 식료기아가 심각화되고 있다. 마땅히 기아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일시적인 원조가 아니고 각국에 있어 그 나라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힘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우리는 전부터 식료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내수요는 국내생산으로 지탱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만 수입한다는 생각에 입장할 것이고 비교우위(比較優位)의 원칙에 의한 자유무역의 물은 식료, 농산물에는 적용치 않을 것을 주장하여 왔다. 농산물의 무역물에 대해서는 갓트의 장(場)에서도 작년, 농업무역위원회에서 「농업의 특수성」에 심분 고려하여 검토한다는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농업분야에서 최강국인 미국에서 조차 유제품(乳製品) 등 13품목을 자유화의무면제(自由化義務免除) 품목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사탕에 있어서는 갓트위반이 되는 수입제한을 실시하고 식육(食肉)에 대하여서도 국내법에 의한 수입규제의 발동을 암시하여 호주등에 자주 규제시

※ 4. 갓트GATT...관세무역의 一般協定 국제간 무역의 진작을 목적으로 1947年 成立, 加入國 37개국

※ 5. 新라운드...日本의 主導로 된 갓트의 多角的貿易交涉案 쇠고기, 감귤類에 關한 東京라운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多角的으로 貿易을 해보겠다는 日本의 主導案이나 仏蘭西의 反對로 停滯되어있음.

※ 6. 본 사밋트...1985. 5. 2 西獨의 首都본에서 第11回 先進國首班會談을 열어 成長持續을 向한 國別責任分擔을 明記한 “本 經濟宣言”을 發表하고 폐막하였다.

키고 있다. EC 도 각국이 각각 수입제한품목을 갖는 외에 공통농업정책에 의하여 수입과징금 제도를 갖고, 또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붙여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EC는 신라운드에의 참가에 동의함에 있어 공통농업정책은 그 권외(圈外)로 하여 취급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만이 농림어업의 분야까지 포함하여 무원칙적인 시장개방을 진전시킬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 또 이 이상의 농림수산물의 시장개방은 우리 일본의 국토, 자원, 환경의 유지, 보전을 불가능케 하고 장래에 화근을 남기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86년도 춘파용 국산옥수수종자 공급안내

1. 품 종: 수원 19호, 횡성옥
2. 공급예정시기: 1986년 3월 상순~중순
3. 공급가격 나. 수원19호: 27,720원(포/20kg)
 나. 횡성옥: 27,720원(포/20kg)
4. 포장단위: 20kg
5. 파종량: 10a 당 2.5~3kg 정도(300평)
6. 공급방법: 외국산 종자와 같은 수송방법으로 공급
7. 신청수량: 제한없음(포장단위로만 신청)
8. 신청기간: '86년 1월 22일부터 2월 20일까지(30일간)
9. 신청장소: 본협회
10. 종자대금의 납부
 가. 신청시: 종자대의 20%
 나. 인수시: 종자대의 80%
11. 신청대상예정자
 가. 외국산 옥수수종자를 신청하지 못한 농가
 나. 외국산 옥수수를 신청하였더라도 옥수수종자가 더 필요한 농가
12. 외국산종자: 1986년 1월 1일 이후에는 외국산 옥수수종자의 수입은 못하게 되어 있음.
13. 기타 문의사항은 본협회로 하시기 바랍니다.